

IEC 절차 규정

자료제공 • 기술표준원 전자정보표준과

제1항 정회원 및 준회원 자격

동 위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고, 정관 5조에 의거 설립된 국가위원회는 정관 제24조 제1절차에 의거 신청서를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 기존 회원국에 의한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가위원회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정관 제5조와 절차 규정 1항 참조).

동 위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적어도 2년동안의 연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적어도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년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년간 분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회원국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총회, 총회상임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위원회의 문서나 발간물을 받을 수 없으며, 정회원의 경우 투표자격이 상실한다.

5년간 자격이 정지된 국가위원회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총 회

총회의 회의 일자 및 장소는 회의시 또는 통신으로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앙사무국은 회의 소집 통보를 적어도 회의 4개월 전에 전체 회원국에 배포한다. 회장은 정회원국이 적어도 회의 2개월 전에 서면 요청할 경우 또는 그의 재량으로 읍저버를 초청할 수 있다.

회의에서 결정이 요구되는 의제안과 문서는 적어도 2개월 전에 배포된다. 다른 문서와 의견제출문서는 적어도 회의 6주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위에 의거 배포되지 않은 문서나 의제에 없었던 추가적 시안이라도 참석회원의 반대가 없다면 총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체 회원국 절반의 출석이 의결정족수를 구성하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총회 회원은 총회 참석시 3인 이하의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회장은 통상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정관에 의거 중앙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할 투표마감일자는 회원국이 발송일로부터 7일이내에 확실히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사무국이 송부한 투표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의사록안을 회의 3개월 이내에 모든 국가위원회에 배포해야 한다. 의사록안에 대한 서면 의

견제출은 배포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없을 경우 이 의사록은 확인된 의사록으로 간주된다. 접수된 어떤 의견도 회장과 중앙사무국은 처리할 것이다. 총회의 결정사항은 모든 회원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3항 총회상임위원회

동 위원회의 임명은 그의 공식 임기 동안 정관 제9조에 따라 총회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총회상임위원회의 개별 회원들은 3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앙사무국은 총회상임위원회의 개별 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있는 정회원 국가위원회 선거 6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회원 국가위원회에게 후보를 2개월 이내에 추천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지명추천된 정회원에 대하여 입후보 여부를 확인하고, 입후보를 원할 경우에는 지명추천된 사람의 성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각 회원국에 요청한다. 중앙사무국은 입후보를 수락한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목록과 지명자의 상세사항을 추천국가를 밝히지 않고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전체 회원국에 회람한다.

선출된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개별 위원들의 교체에는 총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선출을 위한 투표는 임기가 만료되는 총회상임위원회의 임기 만료 이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한다.

새로이 선출된 개별 회원들의 임기는 선거 익년의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회의시 총회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참석 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8인 이상의 총회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석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서신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8인 이하가 투표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로 결정이 유보된다.

대리투표는 인정된다. 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상적 결정은 (가급적 전자적 방식을 택해) 서신에 의한다. 회의 소집, 통보, 의제 및 문서는 최소한 회의 4주전에 전자적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제4항 이사회

15명의 이사회 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a) 6명의 위원(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은 가장 많은 분담금과 가장 많은 수의 기술위원회/SC 간사를 맡고 있는 6개국의 국가위원회의 지명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정확한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 규정 부칙1 참조)
 - b) 9명이 위원(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은 모든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지명으로, 지명된 자들의 자격, 균형적인 지역분배, 국가위원회가 맡고 있는 기술위원회/SC 간수 수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위의 a)에 의한 위원들(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위원회가 여전히 위의 a)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연임된다. 그런 위원들(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은 2번 이상 임기를 맡을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속한 국가위원회가 이들의 두번째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들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위원(그리고 대리인)을 총회 선거에 추천해야 한다.

위의 b)에 의한 위원들은 3년 임기로 선출되고, 매년 1/3이 선출된다. 이들은 바로 연임이 가능하다.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선거 익년의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회원 국가위원회는 자신이 지명했던 위원을 그의 임기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이때 총회상임위원회의 긴급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 위원 선거 6개월 전에, 중앙사무국은 모든 정회원 국가에 그들이 입후보시키고자 하는 후보를 2개월이내에 지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후보를 지명한 각 정회원 국가위원회에 대하여 이사회 입후보 여부를 확인하고, 입후보를 원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경력뿐만 아니라, 지명자의 성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각 회원국에 요청한다.

중앙사무국은 입후보를 수락한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지명자와 대리인의 목록과 상세사항을 추천국가에 밝히지 않고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전체 회원국에 회람한다.

선출을 위한 투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국의 임기 만료 이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한다.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이사국 위원을 지명할 수 없다.

이사회 위원 혹은 지정 대리인만이(그리고 1인의 전문가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위원이나 그의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이사회위원의 승인하에 의장은 교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사국이 아닌 국가위원회가 미리 통보한 2인은 총회와 함께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석할 수 있다.

의장의 임기 만료전의 총회 6개월 전에, 중앙사무국은 모든 정회원 국가위원회에 2개월 이내로 후보 지명을 요청해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추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명자를 전체 회원국에 회람한다.

만약 1인 이상의 후보자 지명되면 차기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투표가 있게 된다. 의장의 임기는 선거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회의시 이사회의 결정은 투표한 정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사회 위원 8인의 참석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서신투표의 경우에도 투표 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채택되며, 위원 8인 이하가 투표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로 결정이 유보된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사무국은 적어도 회의 4개월전에 모든 국가위원회에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정회원 국가위원회가 적어도 회의 2개월전에 서면 요청할 경우, 또는 그의 재량으로 옵저버를 초청할 수 있다.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의제안이나 문서는 적어도 회의 2개월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의 다른 문서나

의견은 적어도 회의 6주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위에 의거 배포되지 않은 문서나 의제에 속하지 않은 추가 사안이라도 참석위원들의 반대가 없다면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중앙사무국은 의사록안을 회의 3개월 이내에 모든 국가위원회에 배포해야 한다. 의사록안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은 배포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없을 경우 이 의사록은 확인된 의사록으로 간주된다. 접수된 어떤 의견도 이사회 의장과 중앙사무국은 처리할 것이다.

동 위원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 결정은 총회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제5항 적합성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의 12명의 위원들은 정회원국의 지명에 의하여, 이들의 자격, 균형적인 지역 분배, 국가위원회의 적합성 평가 활동의 참여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들은 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이들의 폭넓은 경험에 기초해서, 고객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 단체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

12명의 위원들의 6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2년마다 이들의 1/3이 교체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그리고 대리인)의 임기는 선거 익년의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할 수 없다. 적합성평가위원회 선거 6개월 전에, 중앙사무국은 모든 정회원 국가위원회에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입후보하고자 정회원 국가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확인하고, 입후보를 원할 경우, 이들이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경력을 제출토록 각 회원국에 요청한다. 중앙사무국은 입후보를 수락한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목록과 지명자의 상세사항을 추천국가를 밝히지 않고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전체 회원국에 회람한다. 선출을 위한 투표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한다.

위원의 국가위원회는 자신이 지명한 위원(그리고 대리인)을 총회상임위원회의 승인하에 교체할 수 있다. 의장의 임기 만료 전 총회 6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은 후보를 2개월내에 지명토록 요청해야 한다. 지명이 이루어지면 중앙사무국은 이를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추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회람한다. 만약 1인 이상의 후보가 지명되면,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장을 차기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그 다음에 총회는 의장의 임명을 승인한다.

의장의 임기는 그의 임명이 승인된 총회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사무국은 적어도 회의 4개월 전에 모든 국가위원회에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 의장은 정회원 국가위원회가 적어도 회의 2개월전에 서면 요청할 경우, 또는 그의 재량으로 옵저버를 초청할 수 있다.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의제안이나 문서는 적어도 회의 2개월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외 다른 문서나

의견은 적어도 회의 6주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위에 의거 배포되지 않은 문서나 의제에 속하지 않은 추가 사안이라도, 참석위원들의 반대가 없다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회의시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결정은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의 과반수참석이 의결정족수가 된다. 서신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위원의 과반수 이하가 투표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로 결정이 유보된다.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 위원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 결정은 총회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미확인 의사록을 회의 3개월 이내에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의사록안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은 배포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없을 경우 이 의사록은 확인된 의사록으로 간주된다. 접수된 어떤 의견도 적합성평가위원회 의장과 중앙사무국은 처리할 것이다. 확인된 의사록은 모든 국가위원회에 배포되어야 한다.

제6항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국제 규격의 개발 및 체계적 검토이다.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발간된 ISO/IEC 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회원국은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고 그 업무가 조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7장 회장 당선자

회장의 임기 2년째 되는 연도의 총회 6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은 회장 당선자를 선출키 위해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정회원에 요청한다. 후보자가 수락한 추천은 중앙사무국이 추천국가를 밝히지 않고 전체 회원국에 배포한다. 후보자가 1인 이상 지명되었다면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8항 회 장

회장 임기 2년내에 회장의 사망, 직무수행불능, 또는 사임의 경우 중앙사무국은 2개월 이내에 즉시 후보를 추천해 주도록 정회원에 요청한다. 후보자가 수락한 추천은 중앙사무국이 정관 제24조 제2절차에 의거 투표를 위해 추천국가를 밝히지 않고 전체 회원국에 배포한다.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임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표한다. 임기 3년째 되는 해에 회장이 사망, 직무수행불능 또는 사임할 경우 회장 당선자가 즉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9항 부회장

이사회 의장과 적합성평가위원회 의장 및 제3 부회장의 역할에 덧붙여, 부회장들은 요청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하거나 또는 임원들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10항 재무관

재무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총회 6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은 모든 정회원국에 2개월 이내에 후보 지명을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지명자가 후보 수락할 경우, 중앙사무국은 추천국가를 밝히지 않고 모든 국가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후보자가 1인 이상 지명되었다면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1항 재 정

동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지위가 제의된다. 총회에서 승인한 방법(1인당 국민총생산과 연간 전력 소비량)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비율이 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으로 합의한 최소비율과 같거나 더 높을 경우, 정회원이 된다.

다음의 2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준회원이 된다.

- a) 총회가 승인한 방법에 의한 산정된 연 분담금 비율이 정회원 국가위원회가 납부하는 최저 비율보다 더 적다.
- b) 이렇게 산정된 분담금 비율이 적어도 정회원국가위원회가 납부하는 최저분담금 비율의 반이상이 되어야 한다.

준회원으로 가입된 국가위원회는 그 나라에 산정된 분담금 비율의 반액을 매년 납부한다. 신청국 분담금 산정이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최저 분담금 비율의 반액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국가는 예비준회원국이 된다. 그러나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최저 분담금 비율의 1/4을 납부키로 합의한 국가는 준회원자격을 취득한다. 회원국의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이내에 전액을 중앙사무국에 송금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분담금을 연 2회 분할로 송금하고자 한다면, 1/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송금할 수 있다.

분담금을 연체한 회원국은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체납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 고문단 및 재무관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유지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동 위원회의 경비 지급용 수표나 어음에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회장, 재무관, 사무총장 혹은 중앙사무국 직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정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그룹A : 분담금 납부액이 전체 분담금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위원회

그룹B : 분담금 납부액이 전체 분담금의 1%에서 6.99%를 차지하는 국가위원회

그룹C : 분담금 납부액이 전체 분담금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위원회

준회원국은 위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2항 언 어

각종 회의시에는 동 위원회의 3개 공용어인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사무국은 총회에서 공용어중 어느 한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할 경우 나머지 2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총회상임위원회, 이사회,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그러나 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와 모든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한 모든 문서는 영어와 불어로 작성한다.

동 위원회의 기타 회의시 논의된 사항은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사가 소속된 회원국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의 통역을 보장할 경우, 영어 및 불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규격은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한다.

러시아관은 중앙사무국을 대신해서 러시아 국가위원회에서 편집, 작성하고 인쇄하며 중앙사무국과 합의한 부수의 문서 사본을 무료로 공급한다.

동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격을 위에서 언급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면 이러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국가의 국가위원회가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번역을 담당할 국가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공식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와 함께 번역서를 중앙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번역물을 포함한 문서 또는 발간물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번역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총회상임위원회의 승인하에 위원회의 발간물을 공용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발간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 관련 문서의 통신문, 의사록과 최종안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간된 ISO/IEC 지침서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3항 IEC 국제 규격

동 위원회의 국제규격 발간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간된 ISO/IEC 지침서가 규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서문을 규격서 첫머리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항 복제권

회원국이 배포를 목적으로 자국에서 위원회의 문서와 발간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총회상임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회원국은 위원회의 발간물이 자국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항 절차규정의 개정

절차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정관의 개정과 같은 방식으로(제26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정안은 정관 제24조 제1절차에 의거 투표로 개정된다.